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20나58333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20나5833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9가소1844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변론 종결 2020. 10. 16

판결 선고 2020. 11. 13

제1심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9가소1844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 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소장부분송달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 8. 14. 피고와 사이에 ' 원고가 피고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하 는 C 신도시 임대주택 입주권 대금의 일부로 2, 0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가 원고 또는아들인 D명의로 임대주택입주권 신청을 접수하되,피고 가 이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7일 내에 원고에게 2, 000만 원을 반환하기' 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 8. 14. 피고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합계 2, 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2, 000만 원을 지급받고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C신도시 임대주택입주권 신청을

접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의 위임을 받은 E이 원고의 아들 D 명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C신도시 임대주택 입주권 신청을 접수하였다.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D을 지장물보상금 지급대상자로 보고 해당금원을 공탁하였기 때문에 D에게는 입주권이 부여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피고의 위임을 받은 E이 원고의 아들 D명의로 한 국토지 주택공사에 C신도시 임대주택입주권 신청을 접수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자료가 증거로 제출된바 없으나,을 제 1내지 4호증의 각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있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원고의 아들 D명의로 한 국토지 주택공사에 C신도시 임대주택 입주권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F은 2005. 3. 경성남시 수정구 G토지를 임차한 후,그 지상에 주거용 비닐하우스 및 주거용 판넬(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②성남시 수정구 G토지는 이 구 택지 개발사업에 편입되어지장물보상 절차가이루어졌는데,한국토지 주택공사는 위택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지장물에대한 보상금 수령자를 알 수없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 2호에 따라 2012. 7. 19. 수원 지방법원성남지원에 피공탁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보상금 61,186,660원을 공탁하였다.

③ D을 포함한 16명은 F으로부터 이 사건지장물을 매수한 자로서 공탁금61, 186, 660원의 출급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2 . 12. 26. 경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수원 지방법원성남지원 2012가 단 51508호로 공탁금출급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D은 소송 계속 중이던 2013. 3. 12. 자신의 소를 취하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문성관 판사 이주영 판사 김정중